##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2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민형배·김철민·박광온

소병훈 · 송갑석 · 안규백

양경숙ㆍ이소영ㆍ이용빈

이정문 · 임종성 · 주철현

최종윤 · 홍익표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러 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

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자 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 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 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
	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u>활</u>
	동을 말한다.